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6 발의연월일: 2024. 12. 17.

발 의 자 : 홍기원 · 김태년 · 한민수

윤종군ㆍ허 영ㆍ윤준병

박지원 · 강훈식 · 이정문

송옥주 · 이연희 · 민형배

한정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 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제14조(휴직자・장기파견자 등의
결원 보충) ① ~ ③ (생 략)	결원 보충)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